

[일련번호 : 1]

양 천 구

주 의 요 구

제 목 공사 제경비(산업안전보건관리비, 환경보전비) 및 4대보험료 정산 소홀

관 련 기 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□□과

내 용

1. 업무개요

□□과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사 계약 및 관리·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.

2. 관계 규정 및 판단 기준

「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」(고용노동부고시) 제3조(적용범위)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1호의 건설공사 중 총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”(이하 안전보건관리비라 함)를 계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7조(사용기준) 및 제8조(사용금액의 감액·반환 등)에 의거 안전보건관리비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발주자는 도급인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 제9조(사용내역의 확인)에 따라 도급인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착공 후 6개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, 6개월 이내에 공사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 시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「건설기술진흥법」 제66조(건설공사의 환경관리)에 따르면 건설공사의 발주자

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및 오염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,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,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「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」(국토교통부고시) 제10조 제2항에 따라 환경관리비 중 간접공사비의 사용내역(수량 및 비용)에 대하여 준공 검사 시 발주자의 확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.

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26조의2(보험료 등의 비용 명시 및 정산) 제2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보험료등을 부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에게 보험료등을 납부한 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또한,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발주자는 건설사업자가 보험료 등을 납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, 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명시된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.

3.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

□□과는 2022년~2023년까지 ‘***** *,** ** **공사(긴급)’ 외 2건의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금 정산을 하면서 환경보전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(사진대지 등)가 미비하였음에도 대가를 지급하였다.

2022년~2024년까지 ‘***** ** ***** 운영 용역계약’ 등 총 15건의 용역·공사를 시행하고 대가지급에 있어 원가계산서에 계상된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 지급 시 계약업체의 해당 공사장의 보험가입 및 완납증명서 등을 확인 후 용역·공사에 대한 준공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확인 없이 산재보험료, 고용보험료를 지급하였으며, 국민연금보험료,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의 실제 지출금액을 확인 없이 당초 설계내역 상 금액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.

[표] 제경비 및 4대보험료 정산 소홀 내역

연번	공사명	계약일	부적정 내역
1		2022.04.07.	· 안전보건비 정산소홀 (안전화, 안전모 등 사진대지 없음)
2		2022.12.27.	· 환경보건비 정산소홀 (사진대지 없음)
3		2024.10.08.	· 안전보건비 정산소홀 (안전화, 안전모 구매수량 확인 소홀, 방진마스크, 보안경 사진대지 없음)
4		2022.03.03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 · 건강·연금보험 미정산
5		2022.12.27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 · 건강·연금보험 미정산
6		2022.12.12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상 건설공사 명 미기재
7		2023.01.25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상 건설공사 명 미기재
8		2023.02.03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9		2023.05.18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상 건설공사 명 미기재
10		2023.10.06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1		2023.10.19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2		2023.10.24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3		2023.10.30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4		2024.03.04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5		2024.03.12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6		2024.09.24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7		2024.12.02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18		2024.12.05.	· 고용·산재보험료 완납증명서 부존재

4. 관계기관 의견 및 검토 의견

□□과는 위 사항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.

5. 조치할 사항

□□과장은

앞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, 동일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. (주의)